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789
----------	-----

2021. 7. 20.(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: 박우양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6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7월 9일

-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우양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도시림 등 관련 법률이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 · 제정 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및 어구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 정비.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)
-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상위법 단서 조항 신설 및 「2021년도 위원회 정비계획(도 정책관)」에 따라 발생빈도가 낮은 “도시림 등의 조성 · 관리 심의위원회”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.(안 제5조)
- 조문 및 어구 등 현실화.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도시림 등 관련 법률이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 · 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및 어구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에서 도시림 등 관련 법률이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 · 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적합함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제명 “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 · 관리 심의위원회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·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명칭을 조정함.
 - 제1조 중 “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에

따라 도시림”을 “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도시숲”으로 조문을 정비함.

- 제2조제1호 중 “도시림”이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“도시숲”이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, “제2조제4호”를 “제2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생활림”이란 법 제2조제5호”를 “생활숲”이란 법 제2조제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2조제6호”를 “법 제2조제3호”로 조문을 정비함.
- 제3조 중 “도시림 · 생활림 · 가로수(이하 “도시림”을 “도시숲 · 생활숲 · 가로수(이하 “도시숲”으로 조문을 정비함.
-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.
-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상위법 단서 조항 신설 및 「2021년도 위원회 정비계획」에 따라 발생빈도가 낮아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규정을 정함.
-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8조를 제6조로,
-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, 제16조를 제12조로, 제17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8조를 제14조로 조문을 정비함.
- 제7조(종전의 제11조), 제8조(종전의 제12조)제2항, 제9조(종전의 제13조), 제11조(종전의 제15조) 제1항 제3호의 어구를 현실화하여 조문을 정비함.
- 제13조(종전의 제17조)제1항 중 “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조문을 정비함.
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1. 6.22.~'21. 6.2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- 관련부서에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
“특이사항 없음”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이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·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 및 조문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우양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89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
발의자 : 박우양, 김기창, 서동학,
연철흠, 전원표, 황규철,
이옥규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도시림 등 관련 법률이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·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및 어구 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)
-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상위법 단서 조항 신설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계획(‘21.3. 도 정책기획관)에 따라 발생빈도가 낮은 “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”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(안 제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 :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2021. 6. 22. ~ 2021. 6. 28.(의회 홈페이지)

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 · 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 · 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 · 관리 심의위원회 조례” 를 “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·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” 을 “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도시숲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도시림” 이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을 “도시숲” 이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”로, “제2조제4호” 를 “제2조제1호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생활림” 이란 법 제2조 제5호” 를 “생활숲” 이란 법 제2조제2호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2조제6호” 를 “법 제2조제3호” 로 한다.

제3조 중 “도시림 · 생활림 · 가로수(이하 “도시림” 을 “도시숲 · 생활숲 · 가로수(이하 “도시숲” 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· 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1.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 ·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· 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

제5조의 제목 “(기능)” 을 “(위원회 구성)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하고, 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.
-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,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1. 도시숲 등의 조성 · 관리 관련 전문가
 2.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
 3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-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에 구성하며,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해산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8조를 제6조로 한다.

제6조(종전의 제8조)제2항 중 “위원들이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, 이를 위한 회의 소집은 당연직 위원인 농정국장이 한다” 를 “제5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로 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, 제16조를 제12조로 한다.

제17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8조를 제14조로 한다.

제7조(종전의 제11조)제1항 중 “위원회의” 를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출석으로 개의하고” 를 “출석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의결하되 제9조에 따라 심의 ·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

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”를 “의결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는”으로 한다. 제8조(종전의 제12조)제2항 중 “개시”를 “시작”으로 한다. 제9조(종전의 제13조) 중 “청취하거”를 “듣거”로 한다. 제11조(종전의 제15조) 제1항 제3호 후단 중 “기한 내에”를 “기한까지”로 한다.

제13조(종전의 제17조)제1항 중 “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 제14조(종전의 제18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</u> <u>심의위원회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도시림”이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. 2. “생활림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. 3. “가로수”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. 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할의 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(이하 “도시림 등”이라</p>	<p><u>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</u> <u>심의위원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도시숲”이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 제2조제1호-----. 2. “생활숲”이란 법 제2조제2호-----. 3. ----- 법 제2조제3호-----.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(이하 “도시숲 -----.</p>

한다)에 대한 조성·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.

제4조(도시림 등 조성·관리 심의 위원회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도시림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도시림 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
3. 도시림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
4. 도시림 등의 보전·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도시림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

제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충청

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6. 도시림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② 시 · 군간 업무 또는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

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,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농정국장으로 하고, 간사는 산림녹지과장,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하고, 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.

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,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시숲 등의 조성 · 관리 관련 전문가

2.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

3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에 구성하며,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해산한다.

<삭 제>

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.

1. 도시림 등의 조성 · 관리 관련 전문가

2.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

3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제7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이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, 이를 위한 회의 소집은 당연직 위원인 농정국장이 한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

<삭 제>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제5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삭 제>

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
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
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
와 「민법」에 따른 친족이거나
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
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
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
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
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

②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한
심의 ·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
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, 위
원회 소속 위원은 기피신청을
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
결정한다.

③ 위원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
의 심의 · 의결에서 회피하여야
한다.

④ 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
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할 수
없다.

제10조(위원의 위촉해제) 도지사
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<삭 제>

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
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 제
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
경우

2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,
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
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
3.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
법인·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
상실하는 경우

4.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
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,
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
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
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
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
는 경우

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할 때

제1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
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
한다.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
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
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) ① -----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경우 -----
-----.
② -----
출석과 -----
-----.

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되 제9조에 따라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메일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 3일 전 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. 다만,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2조(회의의 진행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회의 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3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관계 전문 기관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

③ -----

----- 의결한다.

④ -----

---.

----- 경우는 -----.

제8조(회의의 진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시작 -----

-----.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의견청취 등) ----- ----- -----

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 (생략)

제15조(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회
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
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‘조건부 의결’로 한다.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4. (생략)

제16조 (생략)

제17조(수당 및 여비) ① 위원회에
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,
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
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
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
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듣거

제10조 (현행 제14조와 같음)

제11조(의결) ①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.

----- 기한

까지 -----

---.

4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 (현행 제16조와 같음)

제13조(수당 및 여비) ①

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② (혁행과 같음)

제18조(운영 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4조(운영 세칙) 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관 계 법 령

[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시숲” 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·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,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.
2. “생활숲” 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.
 - 가. 마을숲: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
 - 나. 경관숲: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
 - 다. 학교숲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·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
3. “가로수”란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(고속국도를 제외한다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·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.

제13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) ①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도와 구(자치구를 말한다)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

3.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·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시숲 등의 조성 · 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2.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
3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